

제 1139 호
1985. 7. 19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
편집인 : 공도관 조남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
전화 : 735-3337

시보

차 례

◎ 고 시

제 476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 2

제 477 호 : 도시계획사업 (공원조성) 시행허가 2

제 478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 3

제 479 호 : 주택개발제한개발구역지적승인 4

제 480 호 : 도시계획시설 (시장) 결정고시 4

◎ 공 고

제 404 호 : 공산품품질검사불합격상품공고 5

제 405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공람공고 5

제 410 호 : 관인재교부 및 폐기공고 6

제 411 호 :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취소 6

공 람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1362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76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5 호 (85.7.5)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

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7.19.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연장(m)	시점	종점	비고
기정	중로	2	45	15	700	한남동 738-20	한남동 로타리	한남동 666-13 일대의 27m 구간 위치
변경	중로	2	45	15	700	"	"	변경

* 따로붙인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77호

도시계획사업(공원조성)시행허가

1. 건설부고시 제 23 호 (85.1.18)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68 호 (85.2.5)로 지적승인되었으며 동공고 제 367 호 (85.6.26)로 공고된 원서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 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 조와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

음과 같이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7.19.

서울특별시장

가. 시행면적 : 10,004.6㎡

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:

도시계획사업(공원조성)시행 원서근린공원조성공사

다. 시행내역

- 조경시설 : 파고라 1 개소, 화단, 잔디밭 1,854 ㎡
- 휴양시설 : 산책로 220 m, 정자목 1 개소 1,155 ㎡
- 공원관리시설 : 조명등 51 개소, 휴지통 26 개 52 ㎡
- 편익시설 : 음수대 2 개소, 경사로 2 개소, 장의자 68 개, 계단 6 개소, 변소 374 ㎡
- 운동시설 : 다목적 운동장 (늘이마당) 455 ㎡
- 녹지 : 잣나무의 26 종, 3,253 주 6,114.6 ㎡

라. 사업의 시행자

현대건설(주) 대표이사 이명박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- 착공 : 허가일로부터 4 일 이내
- 준공 : 1987.6.30.

바. 사용할 토지명세 (생략)

사. 토지소유자 : 현대건설(주)

아. 위치 및 평면도 : 별첨 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78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
지 적 승 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37 호 (85.7.2)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권한의 위임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7. 19.

서울특별시장

○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목원 (㎡)	연장 (㎡)	시점	증점	비고
신설	소로	1	10	61	강동구신천동 7-23	좌동	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79호
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적승인고시

1. 건설부고시 제 227호 (85.5.18)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결정된 사당제 2구역외 1개구역 (반포제1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

가. 내역

같은법 시행령 제 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적승인 고시한다.
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판할구청 주택과와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7. 19.
 서울특별시장

구역명	위치	면적 (㎡)	비고
사당제 2구역	서울특별시 동작구사당동산 24번지일원	73,100	
반포제 1구역	" 강남구반포동 539 "	25,023	

○ 도면 및 조서별첨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80호
 도시계획시설 (시장) 결정고시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(시장) 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 1항에 의거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 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6조 제

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7. 19.
 서울특별시장

○ 결정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규모 (㎡)	비고
신설	시장	강남구대치동 629외 1필지	3,131.4	

* 결정도면 :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04 호

공산품품질검사불합격상품공고

공산품 품질관리법 제 6 조 제 2 항

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결과 불합격된 다음 상품의 판매 및 판매를 위한 진열을 금지할것을 동법시행령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5. 7. 18.

서울특별시

다 음

업체명	소재지	상품명	상표	규격	금지사유	금지대상제품	금지년월일
대도화학 연료공업사	경기도김포군 검단면왕길리 562-1	착화탄	대도	1호	착화탄품질 검사불합격	85.6.4. 이전제품	85.7.18

부 칙

이 공고는 1985.7.18부터 시행한다.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05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공람공고

1. 도시계획법 제 16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14 조의 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을 다음과 같이 아래장소에서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.

2. 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때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기 바란다.

가. 공람기간 : (시작) 1985.7.19.
(끝) 1985.8. 2.

1985. 7. 19.

서울특별시

다 음

구 분	도시계획안	위 치	규 모	공람장소	비 고
도시계획 시설	도시계획변경 (도 로)	망우동 250-4일대	폭 : 12m 연장 : 112m	동대문구청 토 목 과	위치변경

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10호

관인재교부및폐기공고

관악경찰서장의 직인을 서울특별시
관인규칙 제 3 조 및 제 4 조의 규정

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교부 및
폐기함을 동규칙 제 6 조에 의하여
공고한다.

1985. 7. 19.
서울특별시 장

인 영	폐 기 인	재 교 부 인
		
공인명	관 악 경 찰 서 장 의 직 인	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11호

특정열사용기자재
시공업지정취소

1.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0 조 제 1

항에 의거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
업 지정을 취소하고 동법시행규칙
제 28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5. 7. 19.
서울특별시 장

○ 취소업체명

지정번호	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위반내용
중구 131	부름건설	최정자	중구저동 1가 23-1	무단장소이전
중구 137	대웅에너지	김난기	중구인현동 2가 183-28	